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 확대 등 >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81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 확대	3
2. 출연금 지원 근거 마련	15
【참고자료1】 한국보육진흥원 일반현황	19
【참고자료2】 유아교육진흥원 설치근거 및 운영 현황	2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24.
3. 회부연월일 : 2024. 10.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되어 관리 및 지원하고 있었으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부처가 교육부로 변경된 상황임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 및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지원 역할 또한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기관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포괄하는 종합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보육·유아교육·양육·돌봄 등 대한민국 영유아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고, 저출생 위

기에 정책적 수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등).

Ⅲ. 검토의견

1.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 확대

개정안은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것과 관련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한국보육진흥원이 영유아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u>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제8조(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u>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교육·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u>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u>	1. <u>영유아의 교육·보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분석</u>
2. <u>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u>	2. <u>유치원,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u>
3. <u>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u> 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3. <u>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운영에 관한 업무</u>
4.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5.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6.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 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7.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심리 지원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영유아의 신체·정서·심리·건강·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7.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8.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9.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10.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11. 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 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12. 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u>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u> <u>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u>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한국보육진흥원은 2009년 12월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2023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어린이집 평가 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사업, 국공립 확충 지원 등의 고유업무와 교육부가 위탁하는 시간제보육 사업운영관리,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시행일 '22.6.22)으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업무 위탁 방식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기관 지정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한국보육진흥원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¹⁾

1)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8. (생략)

④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되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업무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가정양육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참고자료1: 한국보육진흥원 일반현황>

【한국보육진흥원 사업 현황】

(‘24. 10. 기준)

법정사업	위탁사업	
◦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 어린이집 평가 사업* ◦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사업*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 보수교육기관 평가 사업 ◦ 국공립 확충 지원 사업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사업 ◦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 지원 사업 * : 위탁사업이면서 법정사업	교육부	◦ 시간제보육 사업운영관리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운영 ◦ 보육과정 연수(표준,누리) 운영 ◦ 영유아 가정 행복지수 척도 활용방안 연구 ◦ 유보통합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개편 방안 연구 ◦ 영유아 권리존중 사업(아동학대 예방)
	기타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어린이집 운영실태 모니터링 (육아정책연구소 위탁·협업사업)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 (행정안전부 위탁사업) ◦ 취약보육 담당 보육교직원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어린이집안전공제회) ◦ 불보 Family Safety 사업(불보자동차코리아) ◦ 삼성 다양성 존중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삼성복지재단)

자료: 교육부

한편, 유치원·어린이집으로 교육과 돌봄 기관이 이원화되어 기관선택에 따라 서비스의 질 차이로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애 초기 영유아 단계부터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출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이 추진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2023.12.26. 일부개정, 2024.6.27. 시행)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였고,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24.6.27.)에 따라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및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등을 추진 중임.

이에 개정안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 및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지원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기관명칭이 ‘보육’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보육·유아교육·양육·돌봄 등 영유아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한정하여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했던 한국보육진흥원이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 역할과 책임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취지가 인정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제8조제1항은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영유아교육·

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설립 목적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영유아 중심의 교육·보육정책 지원'으로 명시함으로써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 외에 교육 업무도 지원하고자 함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²⁾은 제1조에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보육을 모두 포괄하고 있고, 생애 초기 영유아 단계부터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지원을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설립 목적에 영유아 교육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기관의 명칭이 '보육'에 한정되어 영유아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정책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시·도 교육청, 지자체 등 현장의 유관기관과 협업 시 업무의 범위가 보육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되어 교육부에 대한 업무지원 범위가 협소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통합 관리체계에 대한 포괄적 정책지원 기관으로서

2)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만, 기관명칭 변경 시 한국보육진흥원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26호³⁾와 관련하여 부칙으로 다른 법률의 개정도 필요해 보임.

둘째, 개정안 제8조제2항의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① 대상을 유치원과 유치원 교원까지, 내용을 통합연수, 교원과 보육교직원 심리 지원, 영유아 안전 업무까지 확대하고(제2호·제3호·제4호·제5호), ②기존 업무에 ‘영유아’, ‘교육’을 명시하거나(제1호·제6호·제7호), ③업무 위탁의 주체로 ‘교육감’을 포함하는(제13호) 내용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현행법(제8조제2항제1~10호)	개정안(제8조제2항제1~13호)	비고
1.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	1. <u>영유아의 교육·보육</u>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영유아, 교육 명시
2.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2. <u>유치원</u> ,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u>교육·보육</u>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업무 확대
< 신 설 >	3. <u>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운영에 관한 업무</u>	업무 확대
< 신 설 >	4. <u>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심리 지원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u>	업무 확대
< 신 설 >	5. <u>영유아의 신체·정서·심리·건강·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u>	업무 확대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현행법(제8조제2항제1~10호)	개정안(제8조제2항제1~13호)	비고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6.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영유아 명시 (제9호→제6호)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7. 영유아 <u>교육·보육</u>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교육 명시 (제8호→제7호)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u>및 교육감</u>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교육감 명시 (제10호→제13호)

주: 제8조제2항 각 호의 내용 중 위치만 이동한 호는 제외

우선, 업무대상 및 내용을 확대하는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이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아교육진흥원과의 업무 중복은 없는지,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한국보육진흥원은 교육부의 전국단위 영유아 정책을 수행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써 현재는 유보통합 관련 제한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앙단위의 정책수행력, 전국적 관리·지원 경험과 인지도 및 공공기관 운영을 통한 행정력과 전문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내용으로 지원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여 그 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4)에 근거를 두고, 유아교육연구, 정보제공·보호자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교원연수, 유치원 평가, 유아체험교육 및 유아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업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2: 유아교육진흥원 설치근거 및 운영 현황>

다만, 한국보육진흥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조직인 유아교육진흥원과는 조직의 관리체계 및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며 영유아 정책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시·도 교육청 관내에 한정하여 유치원, 교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아교육진흥원과는 사업 수행의 목적과 성격, 대상의 범위 등이 다른 측면도 있음.

4) 「유아교육법」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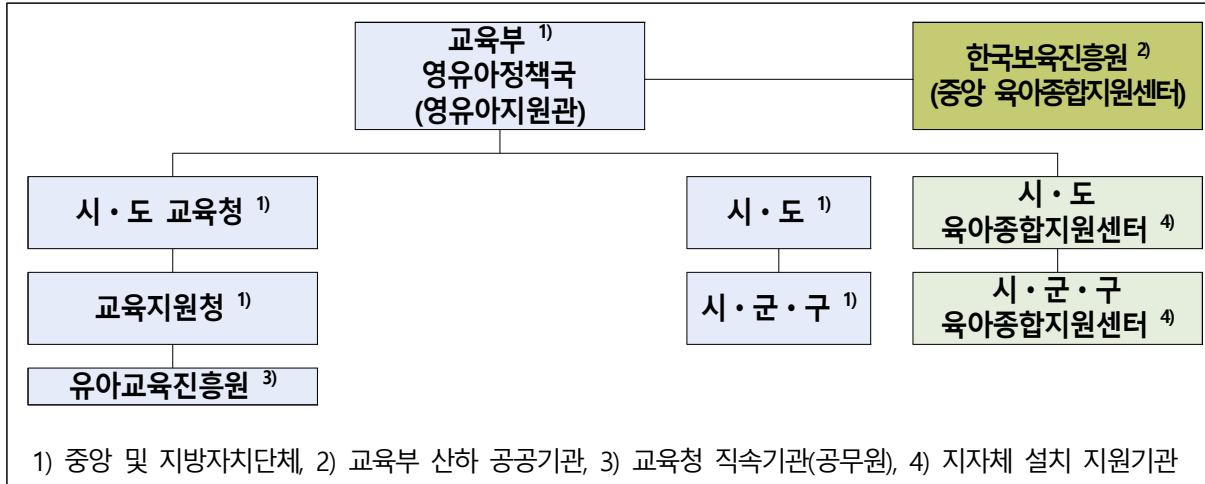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다.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관리체계 현황】



자료: 교육부

【업무범위 확대 관련 한국보육진흥원 업무 현황】

내용	업무 추진 현황('24.11월 기준)	비고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제2호)	- 어린이집 설치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 전국 담당 공무원 교육 - 어린이집 품질 관리 - 어린이집 자율관리 지원(컨설팅 제공) 등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어린이집 운영실태 모니터링(육아정책연구소 위탁·협업사업)	-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 예정 ※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연구, 프로그램·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연수, 유치원 평가, 유아 상담, 정보제공·보호자교육 등 수행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운영에 관한 업무(제3호)	통합연수체계 마련 관련 '25년 4대 분야 직무연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연수체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교육부 지원 중('24.10.~)	통합연수체계 마련 절차 진행 중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심리 지원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제4호)	- 인성교육 및 평가(마음성장 프로젝트)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센터' 시범운영 사업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 어려움 해소 지원(보육교직원 상담사업 지원 및 대체교사 지원 사업 운영·관리)	대상을 유치원 교원까지 확대 예정
영유아의 신체·정서·심리·건강·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제5호)	- 영유아 권리존중(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행정안전부 위탁 사업 - 발달지연 영유아 맞춤형 부모지원 ※ 민간기관과 협업	- 감염병 예방 등 건강 관련 사항 포함예정 - 안전 관련 사항(급식, 시설, 환경 개선 등) 포함예정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만, 개정안에 따라 확대하고자 하는 업무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필요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개정 후 수행할 업무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통합연수체계⁵⁾ 마련·운영에 관한 업무(제3호)는 현재 통합연수체계 마련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다음으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에 ‘영유아’, ‘교육’을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호·제6호·제7호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영유아이고, 현재도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⁶⁾

다만, 제13호에서 한국보육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주체로 교육감을 포함한 것은 교육부의 재원(교부금 등) 및 관리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두고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 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관련

5)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 2024.6.27.

④ 통합연수체계 마련

- (4대 분야 중점 연수) 전체 교원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4대 분야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 중점 추진
- * 교육청·지역대학과의 협력으로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분야	내용
교육과정 실행	사립유·어린이집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역량 강화 지원
영·유아지원	모든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 배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성 강화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영유아 마음건강, 정서·심리 지원 역량 강화
특별한 영유아지원	특수교육대상, 장애위험, 이주배경아동 등 특별한 요구에 대응

- (연수시간 상향) 직무연수 시간을 단계적으로 상향(~'27. 연 60시간)하고, 이에 따른 연수 지원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수형태 다양화
- (문화 조성) 영유아 교사의 학습 공동체 활성화, 기관 내 자율연수 운영 등을 통한 연구연수 문화 조성

6) 다만, 개정안 제8조제2항제7호(현행법 제8조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개정 시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제8조제6항의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⑥ 진흥원은 제2항제8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개정⁷⁾이 진행 중임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추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정책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 및 업무 범위 조정 등 방향과 필요성에 동의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이 본격 추진 중인 상황에서 신설 영유아정책국은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정책 총괄에 있어, 이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유일하므로 관리체계 통합의 일환으로 지원 조직인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역할 정비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반면,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국공립유치원은 보육 중심의 유보통합이 우려되므로 교육 중심의 통합을 위해서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치원 지원, 교사 연수 등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인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와 중첩되어 현장의 혼란이 우려가 되고, 유보통합 관련 교사양성 체계, 교육과정 등 중요한 쟁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므로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관을 명시한 통합법 제정 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7)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3법 개정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제220507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건의원 대표발의, 제220508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건의원 대표발의, 제2205081호)이 2024.10.30.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동 일부개정법률안들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임.

2. 출연금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한국보육진흥원이 현재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⁸⁾으로 지원받고 있으나,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⑤ <u>교육부장관은</u>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제8조(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⑤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u>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2024년도 한국보육진흥원 국고보조금 현황(220억 7,900만원, 자료: 교육부)

구분			예산액(백만원)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21,729백만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9,499
	사업비	어린이집 평가 관리	8,158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및 지원	40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	1,32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689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운영 및 현지조사지원	1,144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사업	561
		국공립 확충 지원	315
시간제보육사업 운영·관리 사업(350백만원)			350

「영유아보육법」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연금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국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의 목적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단체 등의 운영 또는 특정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또한, 출연금은 반드시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⁹⁾, 기관출연금은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 달리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경비 사용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집행잔액의 처리와 같은 정산 등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을 유보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주무부처가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는 경비임.¹⁰⁾

9)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1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205

- 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非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보육진흥원이 수행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지원 사업’이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수행 사업의 성격, 집행상 재량의 허용 범위,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장학재단 등에 인건비,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¹¹⁾

다만, 개정안과 같이 출연의 근거를 두면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와 같이 출연을 보조와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법제적으로는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지원수단을 하나로 특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¹²⁾

11)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2조(출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2) 법제이론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 481 참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자료 1】 한국보육진흥원 일반현황

□ 설립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설립목적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

□ 기관연혁

- ('09.12월)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 *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보육자격관리사무국, 중앙보육정보센터 통합
- ('10.1월) 한국보육진흥원 업무 개시
- ('12.1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
- ('19.1월)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지정
- ('19.6월) 법정기관(특수법인)으로 출범(영유아보육법 제8조)
- ('22.6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 운영('22.6.22.)
 - * 공공기관(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영유아보육법 제7조)
- ('23.1월) 기타공공기관 지정
- ('24.6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 산하로 이관

□ 주요사업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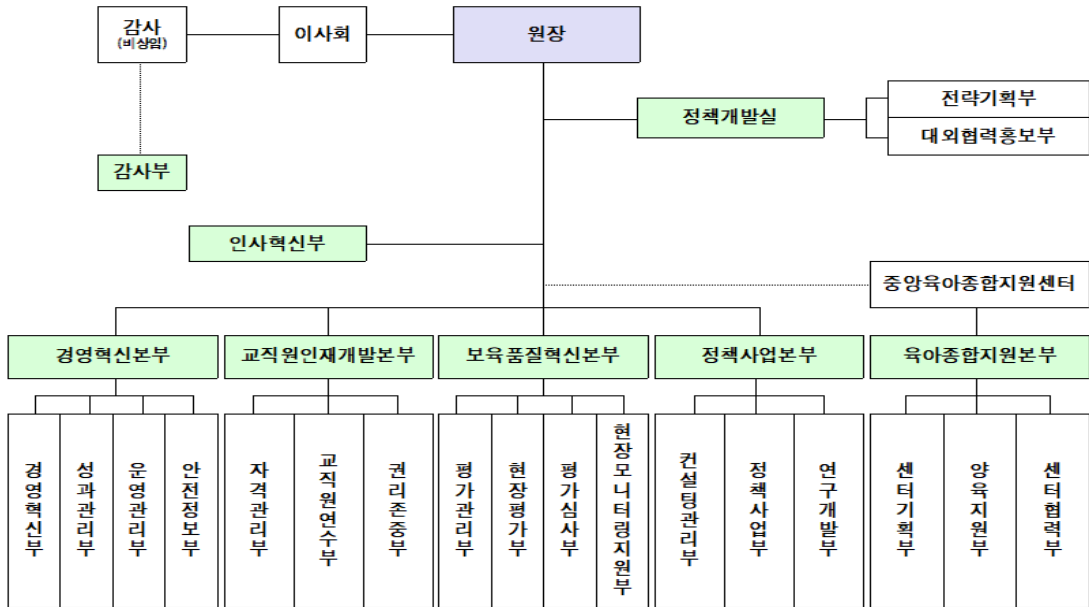
- ('11.7월) 공공형어린이집 사후 품질관리 사업
- ('12.1월~'19.7월)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운영('19.7.31. 아동권리보장원 업무 이관)
- ('13.2월) 시간제보육 시범 사업('15.1.1. 시간제보육 관리사업)
- ('16.2월)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 사업, 보수교육기관 평가 사업
- ('17.3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업
- ('18.2월) 국공립확충지원 사업
- ('19.6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 ('19.2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운영 및 현지조사 지원 사업
- ('19.6월)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위탁
- ('21.7월) 장애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위탁
- ('22.6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운영지원, 보육지원, 가정양육지원) 사업

□ 주요사업

- 어린이집 평가 관리
-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
- 보수교육기관 평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 국공립 확충 지원
- 시간제보육 사업운영·관리

□ 조직·정원 및 예산

○ (조직) 1실 5본부 21부



* 이사회 : 총 13명(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1명, 비상임감사 1명)

○ (정원) 368명(정규직 141명, 무기계약직 226명, 별도정원 1명)

(단위: 명, 2024. 7. 31. 기준)

구분	총계 (a+b+c)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소계(a)	원장	직원	소계(b)	상근	비상근**	소계(c)	상근	비상근
정원	368	142	1	141*	226	-	-	-	-	-
현원	365	141	1	140	187	28	159	37	37	-

* 임금피크제로 인한 별도정원 1명 포함

** 비상근: 어린이집 평가 전담수행 인력(현장평가직)

【참고자료 2】 유아교육진흥원 설치근거 및 운영 현황

< 유아교육진흥원 설치근거 >

(2024. 9. 1. 기준)

구분	시도	설립 근거 조례
1	서울	· 「유아교육법」 제3조, 제6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제4572호 설치조례」(예산법무담당관-9763, 2007. 9. 27.)
2	부산	· 「유아교육법」 제6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3	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6조~제39조
4	인천	· 「유아교육법」 제6조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5조~제37조
5	광주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6331호 2024.1.1. 일부 개정) 제9절 제33조~35조
6	대전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 7. 19.)
7	울산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8조(큰나무놀이터)
8	세종	· 해당사항 없음(진흥원 미설치)
9	경기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2절 제46조
10	강원	· 「유아교육법」 제6조 ·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계획 수립(2006. 6. 23.)
11	충북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43호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629호
12	충남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64호(2009.12.30.)(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783호(2020.7.10.)(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221호(2022.9.1.)(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남부체험교육원)
13	전북	· 「유아교육법」 제6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의2(설치)
14	전남	·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5882호(2024.1.1.) 제12절(전라남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15	경북	· 해당사항 없음
16	경남	·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17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335호)

자료: 교육부

<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현황 및 주요업무 >

('24. 9. 1. 시도 제출자료 기준)

순	시도	구분	공식 명칭	설립 연도	추진업무 범례: ○ 추진업무/ X 미추진업무 ◆ 다른 기관에서 추진							
					유아 교육 연구	정보 제공 · 보호자 교육	프 그 램 및 교 재 개 발	교 원 연 수	유 치 원 평 가	유 아 체 험 교 육	유 아 상 담	기타
1	서울	본원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07	○	○	○	○	○	○	○	
2	부산	본원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09	X	○	○	○	X	○	○	
		분원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놀이체험센터	2019	X	X	X	X	○	○	X	
3	대구	본원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2016	○	○	○	○	○	○	○	어린이집 유아 체험 및 상담 운영
4	인천	본원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12	○	○	○	○	◆	○	○	방과후 공무직 연수 등
5	광주	본원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2010	○	○	○	○	○	○	○	방과후 과정 담당자 연수 등
6	대전	본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2013	○	○	○	○	○	○	○	교육공무직 연수 등
7	울산	본원	울산유아교육진흥원	2011	○	○	X	○	○	○	X	교육연구·동화구연연구 대회,교원연수
		분원	큰나무놀이터	2021	X	X	○	X	X	○	X	
8	세종	본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유아교육부	2019	○	X	○	○	◆	○	○	자원봉사자 연수 유치원·어린이집 연수
9	경기도	본원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2004	◆	○	○	○	◆	○	○	중고등학교 진로체험, 유·보·초 이음교육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2024	○	○	○	○	◆	○	X	어린이집 유아 체험, 보육교직원 연수, 중고등학교 진로체험
10	강원도	본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2010	○	○	○	○	X	○	○	
		분원	평창유아체험학습장	2014						○		
			속초유아체험학습장	2015						○		
11	충북	본원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2012	○	○	○	○	○	○	○	유치원 맞춤형지원(문화예술공 연, 창의인성 강사지원)

순	시도	구분	공식 명칭	설립 연도	추진업무 범례: ○ 추진업무/ X 미추진업무 ◆ 다른 기관에서 추진							
					유아 교육 연구	정보 제공 · 보호자 교육	프 로 그 램 및 교 재 개 발	교 원 연 수	유 치 원 평 가	유 아 체 험 교육	유 아 상 담	기타
12	충남	본원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2010	○	○	○	○	○	○	X	
		분원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	2020	X	X	○	○	X	○	○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남부체험교육원	2022	X	X	○	○	X	○	○	
13	전북	본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12	○	○	○	○	◆	○	◆	미래교육체험 등
		분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1998		○				○		
14	전남	본원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13	○	○	○	○	◆	○	○	
15	경북	분원	포항유아교육체험센터	2011	X	X	X	X	X	○	X	교원연수장소대여
			경주유아교육체험센터	2011	X	X	X	X	X	○	X	
			김천유아교육체험센터	2012	X	X	X	X	X	○	X	
			구미유아교육체험센터	2010	X	X	X	X	X	○	X	
			영주유아교육체험센터	2012	X	X	X	X	X	○	X	
			영천유아교육체험센터	2015	X	X	X	X	X	○	X	
			상주유아교육체험센터	2010	X	X	X	X	X	○	X	
			경산유아교육체험센터	2011	X	X	X	X	X	○	X	
			칠곡유아교육체험센터	2011	X	X	X	X	X	○	X	
16	경남	본원	경상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2001	○	○	○	○	○	○	○	
		분원	경상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2008	○	◆	◆	○	◆	○	◆	과학체험연수 등
			경상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2014	○	◆	◆	○	◆	○	◆	생태체험연수 등
17	제주	본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2012	○	○	○	○	○	○	X	교육공무직 연수 등

자료: 교육부